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96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
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4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3. 4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등 7명(박종길, 장호섭, 박정환, 황국주, 정순옥, 남현주)
- 발의일자: 2023. 4. 7.(금)
- 회부일자: 2023. 4. 7.(금)
- 검토기간: 2023. 4. 10.(월) ~ 4. 14.(금)

2. 제정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명시하고,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신체활동 활성화의 촉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,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마.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¹⁾에 따라 달서구민이 건강에 대해 올바른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,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지역사회건강조사(질병관리청)에 따르면 대구의 비만율(체질량지수kg/m² 25이상)은 2008년 20.4%에서 2021년 29.4%(달서구 26.6%), 당뇨병 진단 경험률(30세 이상)은 2008년 6.9%에서 2021년 8.3%(달서구 8.4%)로 증가했으며 건강생활실천율(금연·절주·걷기 실천)은 2008년 35.6%에서 2021년 31.5%(달서구 30.6%)로 감소하는 등 고혈압, 당뇨병, 심뇌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자가 점차 증가함.
- 이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,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.
- 이 조례안은 지역 상황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, 이에 참여하는 구민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달서구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
- 더불어 신체활동증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사업을 평가·반영하도록 규정하고, 이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
-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충분히

1) 2019년 12월 3일 일부 개정된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은 신체활동장려, 건강관리, 건강친화제도를 명시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환경 조성(제6조)하도록 하는 등 식생활변화·운동부족·흡연·음주 등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치료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사전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예상되고, 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 29조에 따라 조례의 범위에서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한 것은 상위법령에 따라 실효성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조(기능)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
2.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3.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협력방안 강구

4.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 위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장, 구의원, 언론기관 임직원,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.

제4조(운영 등)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되, 심의·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.